

## 현충사관리소 공무직 근로자(안전관리원, 시설물청소원)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

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7. 3.

현충사관리소장

### 1. 최종 합격자 명단

응시분야	직 종	응시번호	응시분야	직 종	응시번호
안전관리원	공무직	5	시설물청소원	공무직	3

### 2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제출기간 및 방법 : 2025. 7. 7.(월) 14:00까지  
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 (\*직접 또는 우편제출)
- 주 소 : (31451)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 인사담당
- 제출서류
  -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붙임1 양식에 작성)
  - ②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\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
  -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  -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(붙임2 양식에 작성)
  - ⑤ 채용신체검사서 1부(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제출 가능)
  - ⑥ 반명함 사진(3×4) 이미지 파일(jpg) \*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 사진 1매 제출
  - ⑦ 통장 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
### 3. 유의사항

- 합격 통보 후에라도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합격 취소가 가능합니다.
- 결격사유 확인 시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충사관리소 채용담당자(041-539-4607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  
2. 결격사유확인서 1부.

[붙임 1]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범죄경력 유무조회, 신규채용 및 및 인사업무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2	범죄경력 유무조회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) 번호 : [123456-1234567](#)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대상자      본인

성     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##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 공무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 년 월 일

채용 예정자: (서명)

현충사관리소장 귀하